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이용계약의 목적

시설은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의 유지 및 개선을 통하여 가능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장기요양시설급여 서비스 제반사항과 그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 목적으로 한다.

계약기간 및 시설 이용료 등

- ① 시설 이용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며,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내에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다만 본인부담을 변동에 따른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고지하여 다음 달 청구분에 소급하도록 한다.
- ② 월 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은 당해연도 고시금액에 의하며, 장기요양보험수가 변동에 따라 개인부담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, 월이용료는 당월의 이용료를 해당월의 5일까지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월이용료는 현금납부, 이용료 계좌로 입금 할 수 있다.
- ③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은 별표2와 같이 한다.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.
- ④ 시설은 입소자(이용자)에게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으로서 입소자(이용자)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의식주서비스와 각종 프로그램(간호, 재활, 운동, 신체기능회복증진 등)을 이용할 수 있다.

급여제공자, 입소자, 보호자(신원인수인)의 권리와 의무

급여제공자, 입소자, 신원인수인(보호자)는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1. 급여제공자의 의무

- 가. 이용자의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협조 의무(단, 외출 및 병원 입원 시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- 나.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(신원인수인)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)
- 다. 표준 케어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- 라.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
- 마.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
- 바. 기타 이용자의 안락.안심.안전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

2. 입소자의 의무

- 가. 월 이용료(본인부담금, 비급여 등) 납부 의무
- 나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- 다.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- 라. 각종 프로그램 참여 의무
- 마.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
바. 기타 시설 생활규칙 이행 의무

3. 신변인수인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

가. 입소자의 시설 입·퇴소결정, 시설 내 교육, 프로그램 참여결정, 시설이용 시 진료위임 및 동의, 이용비용, 주보호자 변경 등 입소자에 대한 주보호자로서의 모든 권리나.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

다.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

라.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
마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의무

계약의 해제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2.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3.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[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]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4.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5.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6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
7. 10일 이상 입원 또는 외박을 하였을 때
8. 입소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하였을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
9. 이용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 신청을 하였을 때
10. 입소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11.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
이용료 및 비용 변경 등에 관한 사항

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.

1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
2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
3.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할 때

② 국민기초수급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입소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요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발생은 이용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시설 입소자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(2026. 1. 1. 기준)

구 분			기준	비용(원)
장기요양급여			1일기준	1등급: 93,070 2등급: 86,340 3,4,5등급: 81,540
입 소 이 용 료	급여 (※본인부담금 20% 기준)		30일 기준	1등급: 558,420 2등급: 518,040 3,4,5등급: 489,240
	비 급 여	식사 재료비	30일 기준	456,000 (식사 396,000원 : $\frac{4,400\text{원} \times 3\text{회}}{30\text{일}} \times 30\text{일}$ (간식 60,000원 : $\frac{1,000\text{원} \times 2\text{회}}{30\text{일}} \times 30\text{일}$)
		상급 침실 이용료	1개월 기준	1인실: 450,000 2인실: 300,000
등급별 월 입소이용료			30일 기준	1등급: 1,014,420 2등급: 974,040 3,4,5등급: 945,240

※ 근거 :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령)